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4월 9일

나.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안 제6조)
- 자문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바지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에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제2호는 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의 정의를, 제3호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참고 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법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항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고령화사회와 더불어 고도화된 AI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넘어 평생에 걸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5~79세 전체 인구 중 평생학습 참여율은 28.5%인 반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1.7%로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며,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고령 등의 이유로)”가 56%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가 21%로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받음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6대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역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재선정되어 작년보다 사업을 확대하여 4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반면, 서울시 타 자치구 중 '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재)선정된 구는 총 5곳이며,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우리 구는 현재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 구가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5
----------	-----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전승관 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라. 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안 제6조)
- 마. 자문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안 제7조~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4. 9. ~ 4. 13.)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